

## 【 2015.08.18(화) 강원일보 】

### 공사업체 향응 공무원 검찰 수사

양구경찰서는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역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에 사업을 주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입찰 비리 등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구=심은석기자

## 【 2015.08.18(화) 건설경제 】

### 아하! 그렇구나

#### 회생개시 전 발생한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회생절차 중인 건설사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여부

**Q** 甲건설회사는 2015. 1.경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2015. 2. 10.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까지도 甲건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2013. 12. 31.자 기준 甲건설회사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최근 관할 관청은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건설회사의 경우에도 위 예외사유에 해당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건설업 등록의 말소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

를 규정한 것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건설업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뒷받침하고자 함과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생법원이 회사 운영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실 발생이 방지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에 대한 감면 등 권리 변경이 이루어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결국 자본금 기준을 다시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미달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에 그칠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 말소의 다른 예외사유의 내용, 채무자 회생 제도의 취지와 그 절차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 두37099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甲건설회사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말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연운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